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의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20505호, 2024. 10. 22.)이 개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사전통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 규정을 추가하고,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관련 서식을 개정해 맞춤형 육아휴직 정책 수립을 위한 육아휴직 통계 구축에 활용하기 위함

또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판단을 위한 소득 반영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123호, '22.12.27.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123호, '22.12.27.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안 제18조)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등이 이뤄지도록 규정(안 제27조 제1항·제2항)

다.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을 추가하고, 보수
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관련 서식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정보를 포함
하도록 개정(안 제50조 및 별지 제30호 서식)

라.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연간 소득의 합계액을 반영하는 시기를 명확화
(별표 1의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7조제5항”을 “법 제47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3조”를 “법 제53조 및 제109조제10항·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3항 및 제109조제10항·제1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유예(유예 해지)”를 “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예(유예 해지)”를 “유예 해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시행규칙 별표1의2의 제1호가목 중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 이후 최초로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 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6항----- ----- ----- ----- ----- ----- ----- ----- -----.
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① 공단은 법 제53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급여 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① ----- 법 제53조 및 제109조 제10항·제11항----- ----- -----. ② ----- ----- 법 제53조제3항 및 제109조제10항·제11항-----.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 ----- ----- -----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
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
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
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
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
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
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입고

----- 유예 -----

-----.

② -----

----- 유
예 해지 -----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
한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
예 해지예정일 변경 사유가 있
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
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
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
액과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
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
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
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
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
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
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
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
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
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
어야 한다.

-----.

⑥ ----- 제4항-----

-----.

-----.

⑦ ----- 제6항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현행	개정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8